

##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

학생회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9조의2(재정에 관한 사항)

1.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.
2.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.

제165조제1항 중 “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”을 “매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익년 가을학기 종강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1분기: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
2. 2분기: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
3. 3분기: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
4. 4분기: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가을학기 종강일까지

제1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.

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67조제1항 중 “예산안·결산”을 “예산안 및 결산”으로 한다.

제16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예산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.

1.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
2.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하반기 예산안 심의

제16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.

1.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 결산 심의
2.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결산 심의

제16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.

제168조제1항 중 “예산안·결산”을 “예산안 및 결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예산안·결산”을 “예산안 및 결산”으로, “기층예산심의회의”를 “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, “예산안·결산”을 “예산안 및 결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.